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28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김재섭·김위상·엄태영
신동욱·서천호·강승규
이헌승·이성권·김기현
최수진·강명구·김정재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가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제재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지도자 외에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체육 강습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휴업·폐업이나 행정제재처분 후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제한하고, 체육시설에서의 체육 강습은 체육지도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 나. 체육시설업자는 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제한)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9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의 제목 중 “배치”를 “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육지도자를”을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이하 “체육지도자”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체육시설업자는 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3조에”를 “제23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하도록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통지하거나 행정제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3(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제한)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u> <u>1. 제29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u> <u>2.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u> <u>3. 제32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u>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략)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신 설>

4. ~ 7. (생략)

② (생략)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등)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이하 “체육지도자”라 한다)를-----.

② 체육시설업자는 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 -----

--300만원-----
-----.

1. 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1항에-----

3의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하도록 한 자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